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13

제 안 년 월 일 : 2023년 12월 19일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확인, 상수도사업본부의 징수 전산 시스템 변경 작업 등에 필요한 절대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24년 4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4월 1일부터로 함. (안 부칙 제1조)

3. 참고사항 : 생 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안 제1조 중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설>	부칙 제1조(시행일) **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** 제2조(적용례)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**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** 제2조(적용례)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8호 중 “부지경계선으로부터”를 “부지경계선(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)으로부터”로 한다.

부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개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.	제34조(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1. - 7. (생 략)	1. - 7. (현행과 같음)
8.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: 면제	8.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(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)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: 면제
9. - 15. (생 략)	9. - 15. (현행과 같음)
② - ④ (생 략)	② -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